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9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77503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8. 30.
판 결 선 고 2023.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255,330,090원, 취득세 가산세 134,150,400원, 지방교육세 51,066,01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16,616,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31. ○○○○로와 ○○○○○○○○○○공사가 합병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11. 피고에게 위 합병으로 취득한 ○○ ○○구 ○○동 ○○○외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여 원고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이후 ○○○○시는 2020. 5. 25.부터 2020. 6. 2.까지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는 ○○○○환승센터 개발부지로 센터 착공 전까지 원고가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시가 관리주체로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제5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15%)에 해당될 뿐임을 확인하고, 2020. 6. 4.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면제한 세액 중 15%에 해당하는 취득세 255,330,090원, 취득세 가산세 134,150,400원, 지방교육세 51,066,01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16,616,870원 합계 457,163,3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2.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합병 전 법인인 ○○○○로는 2016. 3. 30. ○○○○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6. 4. 1.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로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6. 4. 1.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로는 2016. 4.경 ○○○○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환승센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현물출자받은 점, ○○○○로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무단점유자들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 그런데 민간용역 발주에 관한 입찰공고가 2017. 2. 27. 중단되었고, ○○○○시는 2017. 4. 3.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른 개발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였으며, 이후 2017. 9. 26. ○○○○○공사가 대행사업자로 참여하고 실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고하기로 하는 등 공공주도방식으로 변경된 점, 원고는 이러한 외부적 요인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었고, 만약 원고가 기존의 계획대로 진행하였다면 현재 시점에서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사업은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7년이 소요되는 장기간의 사업인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1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에 토지를 이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감면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원고는 2018. 4. 4.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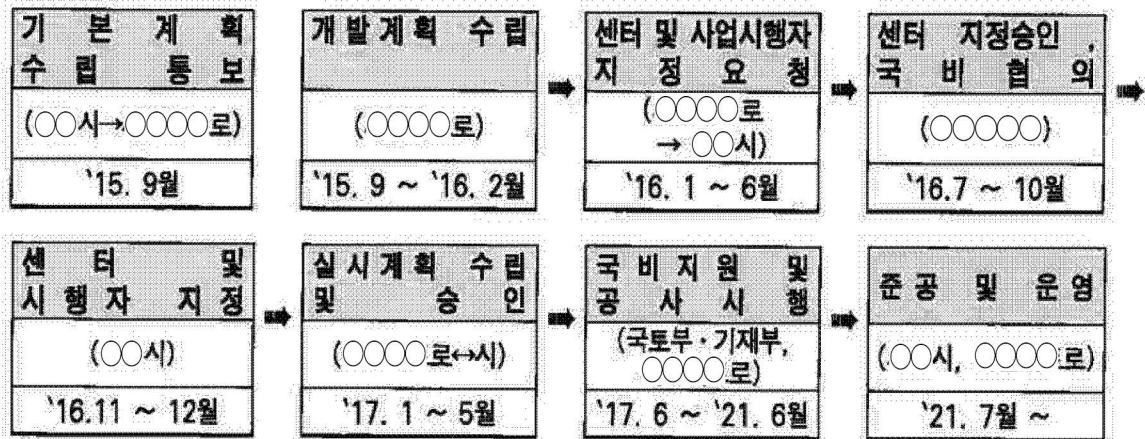
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9. 12. 20.에는 이 사건 사업의 기본 구상 및 사업실행 전략수립 용역을 완료하는 등 변경된 개발사업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철도사업에 이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시는 2015. 9. 25. ○○역 인근의 교통·환승체계 개선과 지역랜드마크 조성 및 ○○○○로의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는데, 그 추진 절차의 기본구상안은 다음과 같다.



2) ○○○○시는 2016. 3. 30. ○○○○로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로는 2016.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현물출자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제4조(현물 평가방법 및 평가액)

“○○시”가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평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다.

출자대상부지	평가업체	평가금액(원)	평균가액(원)
○○동 000-0 등 00 필지(면적: 14,389㎡)	(주)A	252,966,620,000	250,352,900,000
	(주)B	247,739,180,000	

제5조(출자가액)

“○○시”가 현물 출자한 출자금은 부동산평가금액(250,352,900,000원)에 평가비용(257,705,800원)을 가산한 금250,610,605,800원으로 한다.

제6조(현물출자 부동산의 사용)

“○○로”는 본 계약상의 현물출자 부동산을 ○○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부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출자조건)

1. “○○로”는 출자 부동산 내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 민원에 대응하여야 한다.
2. “○○로”는 ○○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부지 내 시유지 이외의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지역균형발전 거점조성 및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 주변 지자체들과 원만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 환승센터 공사 중 운영할 수 있는 대체주차장(200면 이상)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관리계정)재산이므로 환승기능 신설 및 주차면수확대 등 주차환경 개선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주차장 수입 등 준공 후 기부채납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서울시 수입으로 귀속한다.

제11조(기타사항)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과 “○○시”와 “○○로”가 의견을 달리하거나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3) ○○○○로는 2016. 5. 30. 및 2016. 6. 14. 이 사건 토지 등의 점유자들에게 토지인도 및 불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고, 2016. 8. 19.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 처분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072호)하여 2016. 10. 11. 인용결정을 받았



으며, 또한 2016. 11.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6219호, 2018가합587326호(병합)]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936호, 2020나2027943호(병합)]가 제기되어 2022. 1. 13.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대법원 2022다217360호, 2022다217377호(병합)]가 제기되어 2022. 6. 2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4) ○○○○로는 2016. 9.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수립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마련된 공모계획지침에 따라 2017. 2.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관리(PM, Project Management) 용역의 입찰공고를 추진하였는데, 2017. 3. 6. ○○○○시의 위 사업관리 용역 진행보류 요청에 따라 보류되었다.

5) ○○○○시는 ○○○○로 사장, ○○○○○○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 4. 3. 1차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공공개발센터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폐단을 지적하고 ○○○○○○공사가 참여를 제안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재검토를 결정하였고, 이후 2017. 4. 24. 2차 연석회의에서 민간공모 방식의 개발은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로가 사업의 총괄 및 책임을, ○○○○○○공사가 사업실행을 구체화를, ○○○○시가 사업 기획을 지원하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공개발센터와 ○○○○○○공사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되었다.

6) 한편 ○○○○로와 ○○○○○○○○○○공사는 2017. 3. 10. 합병하여 자산과 부채 및 그에 부대하는 권리·의무 일체를 합병기일(2017. 5. 8. 예정)에 원고에게 승계하여 원고를 설립하기 위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4. 합병기일을 2017. 5.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31. 합병되어 원고가 설립되었으



며, 원고는 2018.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이후 2017. 9. 26. ○○○○시의 3차 연석회의에서 ○○○○○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사업자로 참여하고 공공주도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안을 보고하기로 결정되었고, 원고와 ○○○○○공사는 2018. 4. 4.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8) ○○○○○공사는 2019. 12. 20. 이 사건 사업의 기본구상 및 사업실행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개발계획안 수립을 마쳤고, 원고가 2020. 6.경 작성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현황 보고에 따른 향후 추진 일정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추진 일정 계획	도시개발사업	복합건축사업	
		복합환승센터부지	복합개발부지
○ 2019년 12월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공사)		
○ 2020년 4분기	•공동사업추진 협약 체결(○사-○○공사-○○공사)		
○ 2021년 2~3분기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협의(약 8개월)		
○ 2022년	•실시계획 인가, 보상 착수(上)	•민간사업자 공모(4분기, 약 2개월)	
○ 2023년 상반기	•국공유지 보상/점용 협의	•민간사업자 선정 (약 4개월)	
○ 2023년 4분기		•각종 인허가(건축/주택/교통 등) 협의	
○ 2024년 2분기		•실사설계 및 착공	•실사설계
○ 2026년 2분기		•지중변전소 환승센터조성	•임시저류조 설치/운영
○ 2026년 3분기		•환승센터운영개시 (상업, 문화, 업무, 주택 등 환승지원시설건설)	•기존변전소 철거 및 착공
○ 2027년			•복합시설 건설
○ 2028년 4분기	•복합건축사업(복합환승센터부지 및 복합개발부지) 준공		
○ 2029년 1분기	•공공임대시설 입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 14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8147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시는 2016. 3. 30. ○○○○로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 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로와 ○○○○○○○○○공사는 2017. 3. 10. 합병(합병기일: 2017. 5. 8.)하여 원고를 설립하기 위한 합병계약을 체결하



고, 2017. 5. 4. 합병기일을 2017. 5.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5. 31. 합병되어 원고가 설립된 사실, 원고는 2018. 12. 11. 피고에게 위 합병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여 원고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던 사실, 원고는 2018.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5. 31.자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소멸법인의 재산이 신설법인에 인도되고 소멸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신설법인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실질적으로 신설합병하는 것으로 합의된 날이 '합병을 할 날', 즉 합병기일이라 할 것인 점, ② ○○○○로와 ○○○○○○○○○○공사는 합병기일을 2017. 5. 31.로 하는 합병계약에 따라 2017. 5. 31. 합병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는바, 이와 같이 합병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합병계약에서 정한 합병기일에 합병되어 신설법인으로 합쳐진 경우라면 합병기일을 소멸법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원고는 위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18. 12. 11. 피고에게 별도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점,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은 기업합병에 따른 양수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날은 2017. 5. 31.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장애사유가 충분



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와 ○○○○로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 사건 토지 등의 점유자들에게 토지 인도 및 건물의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부지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였고, ○○○○시가 이 사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완료에 상당한 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시는 이 사건 사업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권자로서 2016. 3. 30. ○○○○로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2016. 4. 1. 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② ○○○○시는 이 사건 사업의 착공 전까지 ○○○○시 주차계획과가 주무관청으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공단에 위탁하여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수입금 등을 ○○○○시에 귀속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가 당초부터 이 사건 사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로는 2016. 9.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의 수립을 마쳤고, 2017. 2.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관리 용역의 입찰공고를



추진하였는데, ○○○○시는 ○○○○로 사장, ○○○○○○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 4. 3. 1차 연석회의 및 2017. 4. 24. 2차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공사가 사업실행을 구체화할, ○○○○시가 사업 기획을 지원하여 협력하고 공공개발센터와 ○○○○○○공사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지만 사업의 총괄 및 책임은 여전히 ○○○○로에게 부여되었던 점, ④ 원고는 2017. 5. 31.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이 민간사업자 주도에서 공공주도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⑤ 이후 2017. 9. 26. ○○○○시의 3차 연석회의에서 ○○○○○○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사업자로 참여하고 공공주도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안을 보고하기로 결정되었는바, 이 사건 사업의 관계자들 사이의 연석회의에서의 위와 같은 결정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총괄 및 책임자로서 ○○○○시 등이 3차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것은 사업관계자들 내부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관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후 원고는 2018. 4. 4. ○○○○○○공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사는 2019. 12. 20.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추상적 계획만이 마련되었을 뿐, 취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이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되거나 완공과 관련된 자료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철도사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9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임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종과기준세율(이하 "종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종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도시철도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9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